

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

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 사업으로,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에게 전화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기관과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
- 추진근거
 - 노인복지법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 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- 위탁사무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

○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간 * 2024. 1. ~ 2025. 12.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(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)

- 수의계약 근거: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 (위탁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재위탁 가능)

○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 * 2023년 기준

기관명	소재지	사업비(천원)	수행인력			비고 (관리인원)
			계	사회 복지사	생활 지원사	
5개소	계	145,320	173명	12명	161명	2,620명
강동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형곡동로3길 9, 2층	30,240	36명	4명	32명	562명
구미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검성로 103-2	28,560	34명	2명	32명	512명
금오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해평면 송곡2길 36	28,560	34명	2명	32명	512명
성심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선산읍 단계서길 83-8	28,560	34명	2명	32명	512명
은빛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송원서로8길 57, 3층	28,560	35명	2명	33명	514명

○ 소요예산: 연 145,320천원 정도(시 100%)

4. 참고사항

- 추진근거: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『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』 심의 결과 “적정”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’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과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화비 및 교통비를 지원을 수행기관에 위탁함은 적합하다고 판단됨.